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기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336호)
- 서영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189호)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12653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행복기숙사의 시설관리운영권 및 기숙사 이용용역에 대한 부가 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김기표의원안, 서영교의원안, 정부안) ...	3

I. 개요

1. 김기표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1336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기표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5. 7. 8.

(3) 회 부 일 : 2025. 7. 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복기숙사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기금을 활용해 대학생에게 기숙사 인프라를 제공하여 안정적 학업을 지원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기숙사 시설을 통해 우수 인재를 유치함으로써 사학기관의 지속적인 교육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제도임. 특히 저소득층, 장애인, 차상위 수급자 등 소외계층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있음.

현행법은 행복기숙사가 공급받는 시설관리 운영권 및 기숙사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 자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이에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행복기숙사가 학교 등으로 공급받는 시설관리 운영권 및 기숙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항 일몰을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2. 서영교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2819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영교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9. 9.

(3) 회 부 일 : 2025. 9. 10.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 등 근로자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과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등에 대해 법인세 및 소득세 등을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2025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하고 있어, 기업과 근로자의 상생협력과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한계가 있음.

이에 근로자와 기업 간의 상생협력과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기 위해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와,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소득공제 특례 및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7조, 제88조의2 및 제106조).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행복기숙사의 시설관리운영권 및 기숙사 이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김기표의원안, 서영교의원안, 정부안)

현 행	개 정 안
☐ 부가가치세 면제(제106조제1항) ○ 면제대상 - 행복기숙사(사립 및 연합)에 관하여 제공되는 시설관리운영권 및 기숙사를 이용하여 제공되는 용역(제8호의3) ○ 적용기한 - <u>201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u> <u>까지</u>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	☐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 <u>201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u> <u>까지</u>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서영교의원안) - <u>201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u> <u>까지</u>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정부안) - <u>2015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u> <u>까지</u>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김기표의원안) ☐ 부 칙 ○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김기표의원안 2025. 7. 8. 발의(의안번호 11336), 서영교의원안 2025. 9. 9. 발의(의안번호 12819),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3)

○ 현행법 제106조제1항제8호의3¹⁾은 행복기숙사에 대하여 시설관리운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및 제12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5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며,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9호의3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한다.

8. 교육부장관의 추천이나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건설한 학교시설(「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시설로

영권 및 기숙사 이용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음.

2013년 1월 세법 개정으로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행복기숙사 중 사립은 제8호에 따라, 연합은 제8호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2022년 12월 세법 개정을 통해 201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행복기숙사(사립 및 연합)는 제8호의3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상 행복기숙사 관련 부가가치세 면제 조항]

구 분	2014. 12. 31.까지 실시협약 체결		2015. 1. 1. ~ 2025. 12. 31. 실시협약 체결	
	행복기숙사 (사립)	행복기숙사 (연합)	행복기숙사 (사립)	행복기숙사 (연합)
적용조항	제106조제1항 제8호	제106조제1항 제8호의2	제106조제1항제8호의3	

□ 개정안은 행복기숙사의 시설관리운영권 및 기숙사 이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정부안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서영교의원안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김기표의원안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행복기숙사(사립 및 연합)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도록 함으로써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학교가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및 그 추천을 받은 자가 그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8의2.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설립한 특수 목적 법인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건설한 기숙사에 대하여 국가 및 지자체가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및 그 법인이 그 기숙사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8의3. 다음 각 목의 법인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방식을 준용하여 건설한 기숙사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호에서 “학교”라 한다)가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및 그 법인이 그 기숙사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가.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설립한 특수 목적 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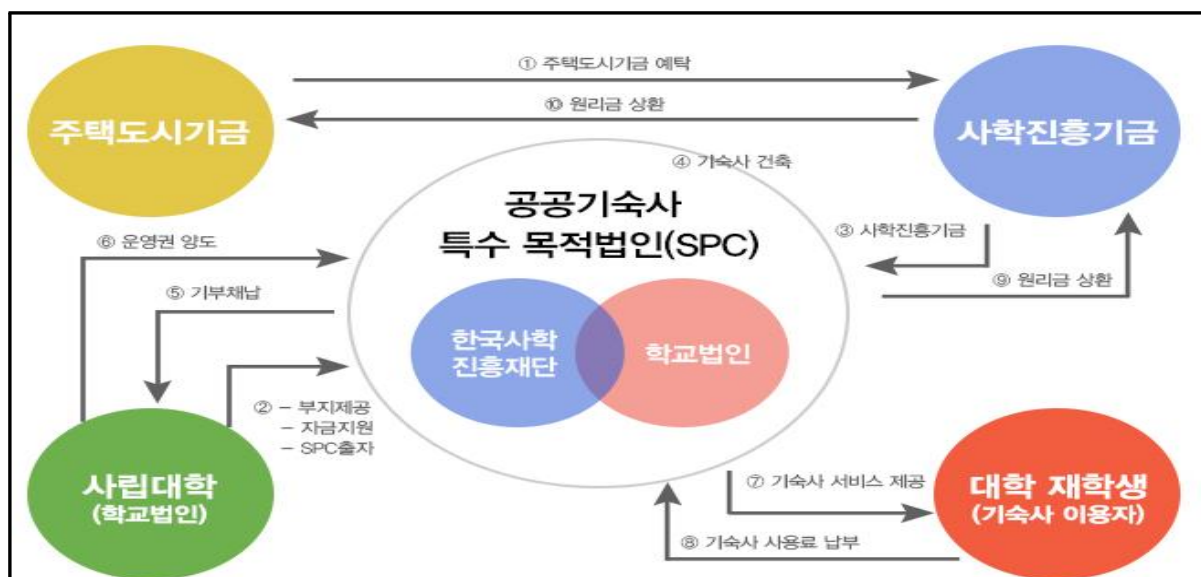
나.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학교가 공동으로 설립한 특수 목적 법인

□ 행복기숙사는 한국사학진흥재단 등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 사업 시행자가 되어 민자사업 중 BTO(Build-Transfer-Operation)와 같은 방식으로 기숙사를 건립하고 대학생들로 하여금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그 종류에는 ‘행복기숙사(사립)’과 ‘행복기숙사(연합)’이 있음.

먼저, 행복기숙사(사립)는 한국사학진흥재단과 사립대학이 각각 50%씩 출자하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특수목적법인은 사학진흥기금(주택도시기금, 공자기금 차입금) 및 사립대학의 지원금 등을 재원으로 사립대학이 제공하는 부지에 기숙사를 건립하여 대학에 기부채납하며, 최대 30년간 기숙사 운영권을 행사하면서 기숙사 운영수입으로 사학진흥기금 차입금을 상환하는 구조임.

행복기숙사(사립)는 해당 사립대학의 학생만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음.

[행복기숙사(사립)사업 사업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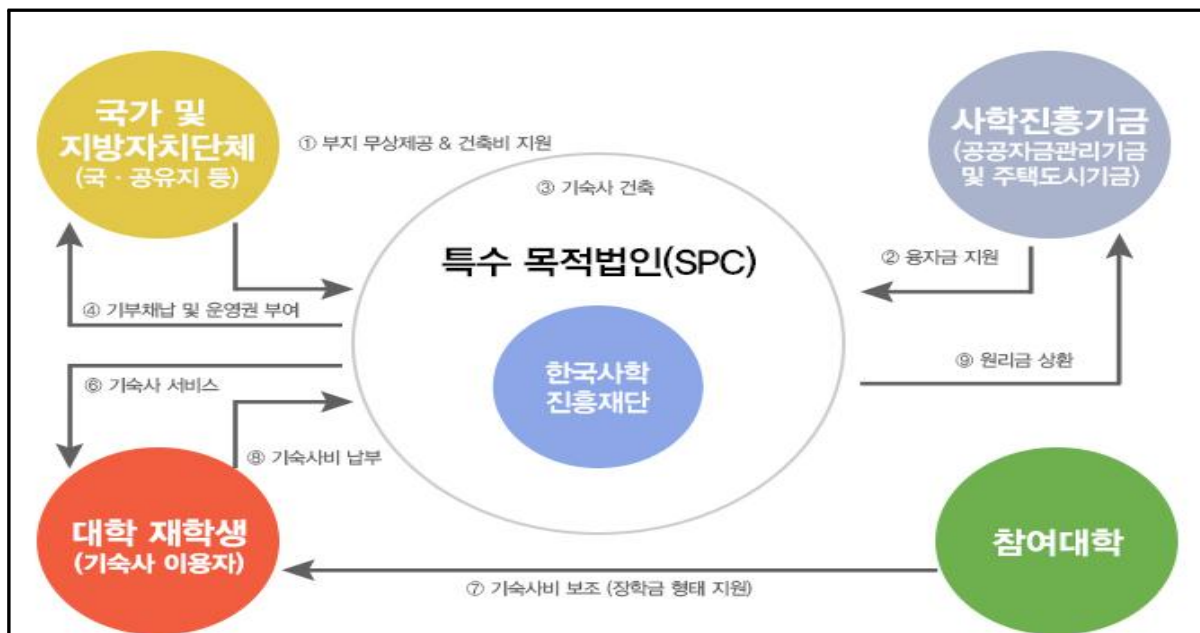


자료: 한국사학진흥재단

다음으로, 행복기숙사(연합)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전액 출자하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특수목적법인은 사학진흥기금을 재원으로 국가·지자체 등이 제공하는 부지에 기숙사를 건립하여 토지 제공자에게 기부채납하며, 최대 30년간 기숙사 운영권을 행사하면서 기숙사 운영수입으로 사학진흥기금 차입금을 상환하는 구조임.

행복기숙사(연합)는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공동으로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으며, 참여대학은 학생 1인당 5만원씩 기숙사비를 지원하여야 함.

[행복기숙사(연합)사업 사업구조]



자료: 한국사학진흥재단

□ 2025년 6월 기준 행복기숙사는 65개(사립 54개, 연합 11개)를 추진하여, 총 36,051명(사립 27,092명, 연합 8,959명)의 대학생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행복기숙사 추진 현황]

(단위: 개, 명)

구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합계	인원
사립	6	7	10	5	6	4	3	3	1	2	3	2	-	2	54	27,092
연합	1	-	1	1	1	-	1	2	2	-	2	-	-	-	11	8,959
합계	7	7	11	6	7	4	4	5	3	2	5	2	-	2	65	36,051

자료: 한국사학진흥재단

- 동 특례제도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는 2021년 59억원, 2022년 52억원, 2023년 57억원, 2024년 59억원이고, 2025년에는 59억원, 2026년에는 61억원으로 전망되어 증가추세에 있음.

[BTO방식으로 건설된 사립대학 기숙사운영권 등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 원)

연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전망)	2026년 (전망)
감면액	59	52	57	59	59	61

자료: 각 연도 조세지출예산서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

첫째, 학업 및 취업준비 기간 중 실질소득이 없는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행복기숙사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를 위한 실시협약 체결 시한을 연장하여 더 많은 대학생의 주거 안정 및 주거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음.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으로 실시협약이 체결된 8개의 추진 중인 기숙사 외에도 총 7개(연합)의 행복기숙사 사

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행복기숙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추진 예정 사업장에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
여 행복기숙사를 이용하는 대학생 간의 조세 형평성 및 정책효과
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행복기숙사 추진 현황 및 사업 수요]

(‘25.6월 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장	소재지	수용 인원	추진 단계	개관 일정	
추진 중 (협약 완료)	사 립	경인여대	인천	403명	시공업체 선정 중	‘27.1월	
		용인대	경기	400명	착공 예정(‘25.7월)		
		인하대	인천	1,810명	착공 예정(‘25.7월)	‘27.2월	
		아주대	경기	990명	착공 예정(‘25.7월)		
		대경대	경기	252명	설계·인허가 중	‘28.1월	
	연 합	한국체대	서울	704명	공사(‘24.6 착공)	‘26.1월	
		서울과기대	서울	1,020명	공사(‘24.12월 착공)	‘27.1월	
		인천대	인천	816명	공사(‘24.12월 착공)		
	소계			6,395명	-	-	
추진 예정 (협약 예정)	연 합	대방동	서울	720명 수준	노후학사(군자녀) 부지 활용, MOU 체결 예정(‘25.7월)	-	
		대전광역시	대전	각 500명 수준	국유지 활용, 지자체 및 인근대학 협의 중		
		광주광역시	광주		폐교 부지 활용, 지자체 및 교육청 협의 중		
		화양초	서울				
		송실대	서울				사립대학 부지 활용, 대학 협의중
		인하대(송도)	인천				사립대학 부지 활용, 지자체 및 대학 협의중
		부산광역시	부산				
	소계			3,720명	-	-	
	합계			10,115명			

주: 수용인원은 추진 중 변동 가능

자료: 한국사학진흥재단

둘째, 행복기숙사 운영주체는 영리단체가 아니라 한국사학진흥재단과 사립대학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므로, 행복기숙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경우 그 효과가 기숙사 운영주체의 이익으로 흡수되지 않고 기숙사비 인하 또는 기숙사 시설개선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²⁾

□ 참고로,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건설·양도·운영(BTO) 방식으로 건설된 사립대학 기숙사 운영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5년말에서 2030년말로 5년 연장할 경우 재정수입은 2026년 9억원 등 2026~2030년 5년간 총 93억원(연평균 19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였음.

[사립대학 기숙사 운영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시 세수효과]

(단위: 억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국세 (74.7%)	-7	-10	-14	-17	-21	-69	-19
지방소비세 (25.3%)	-2	-4	-5	-6	-7	-24	-5
합계	-9	-14	-19	-23	-28	-93	-1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문 의 처

02)6788-5147

2) 2025년도 2인 1실 기준 행복기숙사는 월 27만원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으며, 행복기숙사(연합)는 참여대학 및 지자체가 1인당 5만원을 지원하여 월 22만원 수준으로 제공하고 있음.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따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경우 월 기숙사비가 약 2~3만원 정도 인하될 것으로 예상됨.

참고

행복기숙사(사립·연합) 지원 실적(2025. 6월 기준)

1) 행복기숙사(사립) 지원실적

○ 총 42개교 54개 사업에 사학진흥기금 8,223억 원 지원(수용인원 27,092명)

[2025학년도 1학기 기준]

[단위: 명, 백만 원, 천 원]

지원 연도	학교명	개관 (예정) 연도	수용인원 (협약기준)	총사업비	사학진흥기금 용자액			'25년 기숙사비** (월, 메인실)
					공자기금	주택기금	합계	
합계			27,049	951,038	164,105	658,208	822,313	
2012년 (6개)	경희대(운동장)	'17.09.	1,002	29,437	8,833	16,710	25,543	250.0
	경희대(이문동)	'14.03.		2,580	1,115	1,207	2,322	
	경희대(회기동)	'14.03.	41	1,576	628	790	1,418	상환 완료
	단국대(천안)	'14.03.	924	19,208	6,722	10,564	17,286	255.3
	대구한의대	'14.03.	402	10,540	2,685	6,800	9,485	266.1
	세종대	'15.03.	716	19,990	3,822	12,668	16,490	308.5
	소계		3,085	83,331	23,805	48,739	72,544	
2013년 (7개)	경동대(문막-1)	'15.08.	519	14,403	5,542	6,752	12,294	상환 완료
	광운대	'17.09.	977	31,490	11,963	15,927	27,890	299.4
	단국대(죽전)	'15.03.	922	22,646	7,926	10,546	18,472	255.3
	서영대	'14.03.	102	3,247	1,221	1,700	2,921	301.2
	충북보건과학대	'14.03.	230	6,573	2,351	3,489	5,840	220.0
	경동대(양주)	'16.09.	494	13,151	5,376	6,455	11,831	상환 완료
	동의대 1차	'16.03.	770	22,095	8,294	11,586	19,880	직영(차주) 전환
소계		4,014	113,605	42,673	56,455	99,128		
2014년 (10개)	고신대	'17.03.	744	21,090	10,877	8,103	18,980	207.4
	강릉영동대	'18.03.	501	12,150	4,038	6,896	10,934	245.0
	제주관광대	'15.08.	132	5,490	2,776	2,164	4,940	260.1
	동의대 2차	'16.03.	770	24,787	9,841	12,471	22,312	직영(차주) 전환
	경동대(문막-2)	'16.09.	497	15,922	6,756	7,546	14,302	상환 완료
	성공회대	'17.03.	338	13,578	4,190	6,388	10,578	294.0
	한국국제대	'16.09.	580	11,790	4,906	5,704	10,610	폐교
	한동대 1차	'17.03.	538	13,842	5,703	6,754	12,457	214.7
	한양대(서울)	'17.03.	398	16,990	7,641	7,649	15,290	316.2
	한양대(ERICA)	'17.03.	788	24,750	9,998	12,277	22,275	268.2
소계		5,286	160,389	66,726	75,952	142,678		
2015년 (5개)	나사렛대	'17.09.	298	7,720	1,768	4,097	5,865	233.5
	대경대(경산)	'18.03.	312	9,877	3,636	4,758	8,394	216.6
	영남이공대	'17.05.	304	9,669	3,571	5,130	8,701	262.0
	송원대	'16.04.	210	6,450	2,365	3,385	5,750	238.0
	신한대(의정부)	'17.09.	196	6,490	2,494	3,346	5,840	258.0

지원 연도	학교명	개관 (예정) 연도	수용인원 (협약기준)	총사업비	사학진흥기금 용자액			'25년 기숙사비** (월, 메인실)
					공자기금	주택기금	합계	
합계			27,049	951,038	164,105	658,208	822,313	
	소계		1,320	40,206	13,834	20,716	34,550	
2016년 (6개)	한동대 2차	'20.03.	286	8,900	-	8,010	8,010	265.7
	호서대	'21.03.	801	32,400	-	26,800	26,800	271.6
	상명대	'17.03.	164	3,907	375	3,132	3,507	259.2
	영남이공대(2차)	'20.03.	602	20,874	5	18,781	18,786	262.0
	전주비전대	'18.03.	306	10,110	137	7,951	8,088	246.0
	한성대	'19.03.	326	10,184	86	9,079	9,165	272.4
	소계		2,485	86,375	603	73,753	74,356	
2017년 (4개)	인천재능대	'19.03.	300	11,480	4,378	5,852	10,230	상환 완료
	원광보건대	'18.03.	385	10,859	1,267	8,506	9,773	220.7
	신한대(동두천)	'19.03.	398	9,090	1,472	6,708	8,180	직영(차주) 전환
	수성대	'19.03.	411	12,000	1,902	8,898	10,800	251.0
	소계		1,494	43,429	9,019	29,964	38,983	
2018년 (3개)	대구한의대(2차)	'21.03.	501	20,598	-	18,535	18,535	266.1
	대전보건대	'20.09.	164	7,100	-	6,390	6,390	255.0
	대구대	'21.03.	608	23,000	-	16,100	16,100	직영(차주) 전환
	소계		1,273	50,698	-	41,025	41,025	
2019년 (3개)	상지대	'23.03.	902	30,634	3,064*	27,570	30,634	244.5
	제주관광대(2차)	'21.09.	316	10,946	-	9,851	9,851	266.3
	극동대	'23.03.	500	16,728	1,673*	15,055	16,728	250.0
	소계		1,718	58,308	4,737	52,476	57,213	
2020년 (1개)	대경대(남양주)	('28.03.)	252	8,906	-	8,015	8,015	240.0
	소계		252	8,906	-	8,015	8,015	
2021년 (2개)	동아보건대	-	250	9,455	-	8,510	8,510	사업 종료
	대진대	'25.03.	700	34,586	2,708*	27,072	29,780	295.0
	소계		950	44,041	2,708	35,582	38,290	
2022년 (3개)	동남보건대	'25.03.	418	15,210	-	13,689	13,689	270.0
	경인여대	('27.03)	403	20,940	-	16,904	16,904	260.0
	용인대	('27.03)	400	19,595	-	17,635	17,635	270.0
	소계		1,221	55,745	-	48,228	48,228	
2023년 (2개)	아주대	('27.09)	990	53,009	-	47,708	47,708	320.0
	인하대	('27.09)	1,810	86,194	-	86,194	86,194	333.0
	소계		2,800	139,203	-	133,902	133,902	
2025년 (2개)	동명대***	('29.03)	1,000	41,402	-	20,701	20,701	250.0
	부천대***	('27.03)	200	25,400	-	12,700	12,700	299.0
	소계		1,200	66,802	-	33,401	33,401	

* 재단이 대학자부담금을 공자기금으로 지원, 대학이 운영기간 내 상환

** 기숙사비 : 운영 중인 사업장은 '25. 1학기, 배정·설계·공사 중 기숙사는 사업신청 기준

*** 사립대학 직접용자 사업방식으로 추진

<자료: 한국사학진흥재단>

2) 행복기숙사(연합) 지원실적

○ 총 11개 사업에 사학진흥기금 3,586억 원 지원(수용인원 8,959명)

[2025학년도 1학기 기준]

[단위: 명, 백만 원, 천 원]

지원 연도	사업명	개관 (예정) 연도	수용규모 (협약기준)	총사업비	국고 보조금	사학진흥기금 용자액	기숙사비* (월, 2인1실)	비고
2012년	홍제	'14.03.	516	15,848	-	15,848	326.6	국유지
2014년	부경대	'17.03.	1,528	41,682	4,168	37,514	228.6	국유지(국립대)
2015년	동소문	'23.09.	750	39,992	-	39,992	356.7	국유지
2016년	천안	'20.03.	600	16,359	-	16,359	282.0	공유지
2018년	대구	'23.03.	1,000	45,100	13,800	31,300	264.0	공유지
2019년	대구교대	-	525	32,006	-	32,006	-	국유지(국립대) 사업종료
2019년	부경대 2차	-	1,000	35,425	-	35,425	-	국유지(국립대) 사업종료 예정
2020년	한국체대	('26.03.)	704	38,261	4,449	33,812	333.0	국유지 (국립대)
2020년	서울과기대	('27.03.)	1,020	39,595	4,930	34,665	250.0	국유지 (국립대)
2022년	세종 공동캠퍼스	'25.03.	500	38,043	-	38,043	325.0	공유지
	인천대	('27.03.)	816	43,630	-	43,630	280.0	국립대학 법인부지
총 계			8,959	385,941	29,371	358,594		

* 운영 중인 사업장은 '25. 1학기 기준

<자료: 한국사학진흥재단>